

고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(안)

의 안 번 호	539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 2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청구권자의 범위등 일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존치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폐지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상위법의 명확한 규정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개청구권자 및 그 절차, 공개비용등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업무를 수행함에 별도로 조례를 규정함이 불필요함.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(법률제5242호 : 96. 12. 31)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(안)

고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